안양시 청년상 조례

제정 2019. 3. 5. 조례 제3026호 일부개정 2020. 4. 1. 조례 제3183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3269호(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1. 5. 13. 조례 제3306호 전부개정 2024. 7. 10. 조례 제36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고 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안양시 청년상(이하 "청년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청년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경제 부문
- 2. 사회복지봉사 부문
- 3. 문화예술체육 부문
- 4. 미래혁신 부문
-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 최대 2명에게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 ③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하다.
- 제4조(수상후보자) ① 청년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서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산업경제부문 :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 2. 사회복지봉사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미래혁신부문 : 안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상일 현재

자격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청년상을 수상하였던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의 실·국·소·원장, 구청장, 본청 담당관 및 부서 과장, 동장
- 2. 관내 유관기관장, 각급 학교장
- 3. 10명 이상의 성인인 안양시민
- 제6조(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안양시 청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매년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부서장
 - 2.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3. 안양시의회의원
 - 4.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된 위원은 해당년도 심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 2.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 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468 -

(추 1)

-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7조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9조(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간사는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상) 청년상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 제11조(수상의 취소) ① 청년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 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청년상의 권위와 수상자의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안양시 청년상 수상자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 7. 10. 조례 제364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